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비R&D) 2기(울산) - R&D 및 사업화사전기획지원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도 지역혁신 클러스터(비R&D) 2기(울산)사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기술 보유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비R&D) 2기(울산) 통합 공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비R&D) 2기(울산)
- **(사업목적)** 미래자동차 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강소기업 유치·육성
- **(지원규모)** 예산소진시 마감

연번	구분	지원금	지원개사	기업부담금	신청접수	선정평가
1	R&D 및 사업화사전기획지원	10백만원 이내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한도의 10% 이상 (현금)	'23. 7. 5.(수)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선정이후 ~ 2023. 10. ※ 사업수행완료기간임.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분야)** 미래자동차(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전후방연관산업
 - 전기·수소자동차 : 전기구동, 에너지저장, 전력변환, 연료전지, 열관리, 충전인프라 분야 등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커넥티드 분야 등
 - 공통기반 : 경량소재, 새시, 전장, 의장, 안전 분야 등
- **(지원자격)** ①접수 마감일 현재 울산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 지번 소재 및 2023년 내 이전 예정 기업이고, ②울산 특화산업(전력구동 모빌

리티) KSIC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①-1) (지역 내)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①-2) (지역 외) 울산지역 외(타지역)에서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신설예정
중소·중견기업**

*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 [붙임 1] 참조

** 지역 외 기업은 지원기간 이내(‘23년 10월 말)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내로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을 이전·신설 완료하여야
하며, 이전 후 5년간 유지 必(제출서류 중 이전 협약서 작성 및 제출)

② (KSIC일치) 울산 특화산업(전력구동 모빌리티) 한국표준사업분류(KSIC) 해당
단, 타 업종일 경우 지원 기간 종료일 내 관련 KSIC 업종 변경시 지원가능(공장등록증
상 KSIC 등록 기준)

※ 울산 특화산업(전력구동 모빌리티) 한국표준사업분류(KSIC)

구분	KSIC	항목명
핵심 (5)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연관 (15)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6295	전자감치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

용 예외), 참여기업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 7조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4. 세부 지원내용

□ R&D 및 사업화 사전기획지원

- **(지원내용)** 신규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사전기획지원

구분	주요 내용
R&D 및 사업화 사전기획지원	신규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발 완성품 사업화 기획, 해외판로 개척 및 진출 기획보고서 등 * 최종 결과물 예시 : 기획보고서, R&D 과제신청계획서 등

5. 지원절차 및 평가 기준

- **(지원절차)**



-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필수)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과제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현황 및 상태,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붙임 2-1과 붙임 2-2 _참조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첨부된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확인

- (감점사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최종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6. 추진일정

추진	주요 내용	일 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참여기업 모집공고 ▶ (온라인)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 https://platform.utp.or.kr	7. 6. ~ 예산소진시까지
↓		
기업예비진단	▶ 신청기업 참여제한요건 검토(기관 제외)	상시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기업 현장 실태조사 1회	상시
↓		
평가	▶ 발표평가	상시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과제수행)	상시
↓		
심화컨설팅	▶ 사업수행 중간 점검 및 심화컨설팅 (사업수행기간 내 월 1회이상 현장 방문)	사업완료시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확인	11월 중
↓		
최종평가	▶ 최종결과물 토대로 평가 후 사업비 지급 여부	11월 말
↓		
사업비 지급	▶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사업비 교부	12월 중
↓		
성과관리	▶ 성과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성과관리) - 수혜기업별 매출확인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수출확인증명서 등	12월 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전산접수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사업공지 확인가능)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필수사항 : 접수전 사전 회원가입)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23. 7. 5.(수) ~ 예산 소진시까지 마감															
접수기간	○ (전산접수) 2023. 7. 5.(수) ~ 예산 소진시까지 마감															
서식교부	○ 서식은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내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후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지원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연동															
접 수 처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접수절차	<p>① (회원가입) 전산접수 전 회원 가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회원가입</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승인</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 TP 관리자</td></tr> </table> </td> </tr> <tr> <td></td> <td>⇒</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과제 신청</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td> </tr> </table> <p>-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처음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승인 및 시스템 담당) 기업지원단 안찬미 연구원, 052-219-8587</p> </div> <p>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업 로그인 → 공고현황 → 동 사업 공고 선택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p> <p>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과 PDF파일(칼라)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외 서류)전산 오류 발생했을시 오프라인 제출, 이메일 제출 가능</p> <p>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회원가입</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회원가입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승인</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 TP 관리자</td></tr> </table>	승인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울산 TP 관리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과제 신청</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과제 신청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	신청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회원가입</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회원가입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승인</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 TP 관리자</td></tr> </table>	승인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울산 TP 관리자								
회원가입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																
승인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울산 TP 관리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 style="text-align: center;">과제 신청</th></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td></tr> </table>	과제 신청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	신청자											
과제 신청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																
신청자																
유의사항	<p>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p> <p>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불가 (마감시간 18:00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p> <p>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p> <p>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p> <p>⑤ 전산등록한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사업계획서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p> <p>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p>															
기 타	○ 신청시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7. 제출서류 (각 1부)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 형태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HWP+PDF	-
2	필수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PDF	-
3	해당시	공장등록증	PDF	-
4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PDF	-
5	필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PDF	해당되는 기업 필수
6	필수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 재무제표(국세청발급) 제출	PDF	홈택스
7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PDF	공고일 이후 기준
8	필수	국세 납세 증명서	PDF	홈택스
9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서	PDF	정부24
10	필수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PDF	예비진단 확인용
11	필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예비진단 확인용
12	필수	참여의향 확인서	PDF	-
13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PDF	예비진단 확인용
14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
15	해당시	감점 사항 확인서	PDF	-
16	필수	기업부담금 납부 약약서	PDF	-
17	필수	현장실태조사 및 컨설팅 참여의사 확인서	PDF	
18	해당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설립 약약서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 및 신규 설립 예정 기업	PDF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이전·설립(해당기업에 한함)
 - 울산지역 외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이내('23년 10월 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내로 사업장 등 이전 완료 및 사업장 유지의무(5년)
 - * 사업신청 시 '사업장이전 협약서', 결과보고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중 해당 서류 제출 의무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사업수행 완료 후 5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
- 과제수행 관련 매출액(지원금의 2배 이상), 고용창출(1명 이상) 달성 必
- **사업비 지급 : 후 정산(사업 완료 후)**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부가세, 관세,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사업 지침, 규정,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육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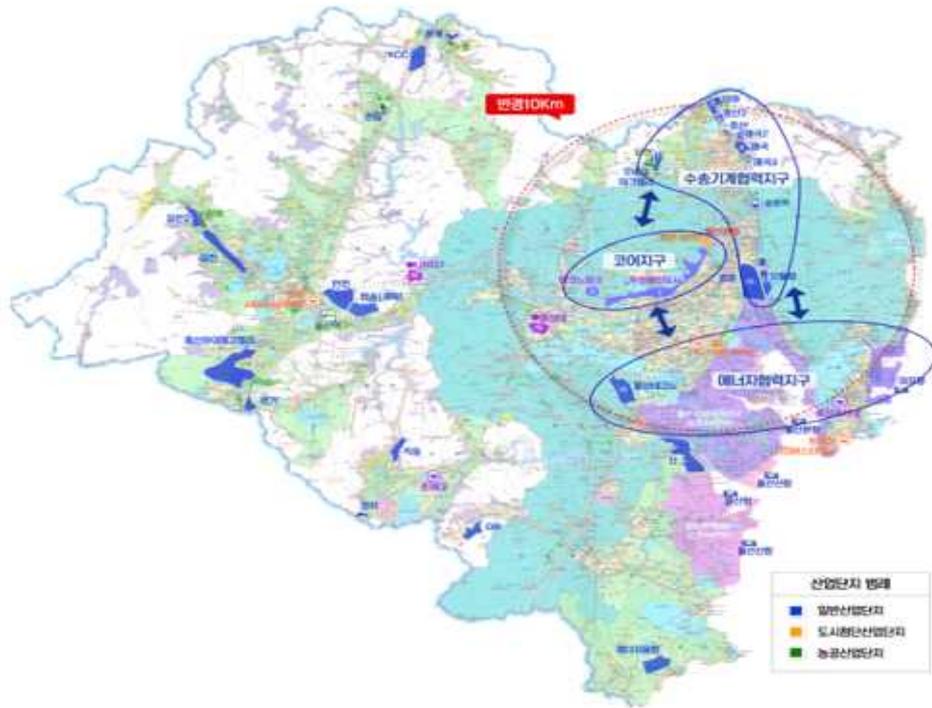
11. 문의처

부 서	(재)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전략기획실	
제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05호	
담당자	성 명	정 미 정 연구원
	Tel	052- 219- 8617
	E-mail	jmcake@utp.or.kr

붙임1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

1. 지구지정계획

□ 위치 : 중구 우정동, 장현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 지정 거점 현황

구분	유형	거점명	지정면적 (km ²)	비고
코어지구	혁신도시	① 울산혁신도시	2.991	
	산업기술단지	② 울산테크노파크	0.124	
	산업단지	③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0.298	
수송기계 협력지구	산업단지	④ 매곡일반산업단지	0.556	
	산업단지	⑤ 매곡2차일반산업단지	0.076	
	산업단지	⑥ 매곡3차일반산업단지	0.158	
	산업단지	⑦ 중산일반산업단지	0.128	
	산업단지	⑧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0.364	
	산업단지	⑨ 이화일반산업단지	0.697	
	산업단지	⑩ 달천농공단지	0.260	
	산업단지	⑪ 모바일테크일반산업단지	0.315	
	산업단지	⑫ 모듈화일반산업단지	0.863	
	산업단지	⑬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업단지)	2.000	
에너지협력지구	산업단지	⑭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87	
연구개발협력존	대학	⑮ UNIST	-	
	대학	⑯ 울산대학교	-	
면적 합계			10.117	

2. 지구 지번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상태	면적(km ²)	필지현황 (지번)	
계				10.117		
혁신도시	울산 우정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조성중	2.991	전체	
산업 기술 단지	울산 중구 다운동, 교동, 북구 매곡동,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울산 테크노파크	완료	0.124	중구	다운동 408,408-4,408-5,411-3, 421,421-2,421-4,430
						교동 138
					북구	매곡동 342-1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427-15
산업 단지	울산 북구 시례동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중	0.298	-	
산업 단지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일반 산업단지	완료	0.556	342-1,346-3,346-2,347-9,350-4,342-3,347-1,354-1,351-8,353-3,351-2,342-5,347-5,346-1,344-1,354-3,354-4,343-2,344-3,353-4,345-1,350-2,342-4,349-4,348-2,347-4,342-1,342-5,343-1,345-5,346-6,347-6,351-3,347-8,353-1,347-9,351-7,353-2,346-5,351-5,352-1,354-6,342-1,346-4,351-4,349-4,347-3,353-1,345-4,347-7,346-3,351-1,354-5,354-2,346-4	
산업 단지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2차일반 산업단지	완료	0.076	875-2,872-1,871-1,874-1,874-2,873-1,873-2	
산업 단지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3차일반 산업단지	완료	0.158	884-3,887-3,885-2,885-5,887-1,883-4,884-2,886-2,885-3,886-4,884-1,886-1,883-3,883-4,884-4,883-2	
산업 단지	울산 북구 중산동	중산일반 산업단지	완료	0.128	1256-4,1256-1,1258-3,1255-2,1258-2,1255-3,1256-2,1258-1,1259,1253-3,1254-2,1253-3,1254-1,1256-5,1257-2,1253-2,1255-1,1255-2,1257-1	
산업 단지	울산 북구 중산동	중산2차일반 산업단지	완료	0.364	1268-2,1264-2,1265-6,1268-3,1263-2,1264-1,1262-5,1266-6,1262-5,1264-2,1264-5,1265-3,1261-4,1262-6,1271-3,1265-4,1265-1,1261-2,1263-3,1265-5,1263-1,1262-7,1266-2,1267-1,1268-2,1270-4,1264-4,1262-4,1262-1,1261-1,1263-4,1264-3,1271-2,1261-3,1270-2,1265-2,1262-7,1270-1,1262-3	
산업 단지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 산업단지	조성중	0.697	산16	
산업 단지	울산 북구 달천동	달천농공단지	완료	0.260	203-6,206-3,208-5,204-2,205-3,205-2,207-1,204-1,208-2,211-6,203-1,211-7,202-2,207-6,206-9,207-4,206-11,206-10,211-2,201-1,212-11,212-5,203-7,210-8,210-7,212-9,206-1,206-2,210-6,205-9,212-11,206-6,204-7,206-12,205-2,212-4,206-8,206-6,211-3,205-6,206-7,207-7,211-5,204-4,204-5,210-5,207-3,207-8,205-7,205-8,208-4,208-3,205-1,210-5,201-2,204-1,210-9,204-9,203-5,210-3,212-1,212-2,205-11,207-9,210-2,206-4,207-10,203-4,210-4,205-5,206-11,205-8,211-4,211-1,203-5,205-4,210-7,212-1,206-12,201-3,206-12,210-1,212-5,212-3,206-5,205-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상태	면적(km ²)	필지현황 (지번)
					12
산업단지	울산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일반 산업단지	조성중	0.315	산6
산업단지	울산 북구 연암동, 효문동	모듈화일반 산업단지	완료	0.863	효문동 996,994,1010,979,987,993,1010-1,990,1012,992,981, 연암동 1367,1436,1363,1368,1434,1392,1393,1365,1370,1364,1362,1360,1366,1391,1368
산업단지	울산 북구 연암동, 효문동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공업단지)	완료	2.000	효문동 158,158-3,176,177-3,196,212-11,212-29,213,238-1,259-29,259-52,259-53,272-1,288,316,317,312-1,316,357-24,357-2,349-2,418-1,418-8,420,420-5,427-1,422-1,426-4,431-5,431-6,434-4,458-1,460-1,462-3,503,509-3,520-2,571-5,585-7,595-1,601-1,605,608-1,608-7,619-1,620-1,642-7,643-1,643-3,651,669,670-8,670-12,676,681,681-3,683-4,686-1,694,694-6,694-8,697,697-9,700-1,702-2,711-2,750-1,759,769-5,800-1,811-1,812-1,812-2,812-3,813-1,813-3,813-4,813-9,813-10,813-11,813-12,813-13,814,815-4,815-5,816-1,816-3,816-4,816-6,816-7,816-8,817,817-4,817-6,975,975-2,975-3,1016,1020,1022,1028,2018 연암동 134,175,221-4,496,529-1,533,588-2,596-3,597-3,617-5,626-3,640-1,643,663-10,663-13,663-39,665-1,681,682-1,686,687,688,691-21,694,694-1,696-7,696-8,711-2,714-15,714-17,722,728,821-1,915,925-1,933,936,945,1286-43,1286-53,1415
산업단지	울산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 산업단지	완료	1.287	25-3~4,26,31,34,38,42,43,46,48,49,51-2,52-4,130,132,136,144-1,145,147,150,151,151-2,152-1,152-3,155,155-3,156,157,158,159,159-1,161,164,168,168-4,170-2,174,176,177,178,179,180,182-2,185-2,192,200-1,227-7,217-1,231,247-3,55,260,270-1,294-2,297-5,305-1,307-3,338-3,339-6,343-2,350-1,354-10,354-16,361,376-3,380,389-1,389-4,389-5,390,391,543-1,562-6,562-9,565,568-1,615,619-1,619-3,619-6,620-5,620-6,760-1~6,761-1~13,762-1~10,763,764-1~24,768-1,768-4,769-4~6,770-1~2,771-1~5,771-7~12,772-1~10,773-1~5,774-1~2,775-1~4,산18-2,산32-1,산33-3,산55-1,산55-2,산55-3,산54-1,산57-1,산62-2,산63,산65-1,산66,산68,산70-1,산71-3,산72-1, 산176
대학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영리	UNIST	완료	-	50, 100, 121
대학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완료	-	665, 730, 769-1, 1051-5

붙임
2-1

R&D 및 사업화 사전기획지원 평가 기준(안)

구분	공통지표					합계
	추진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비	소요예산	
배점	30	30	30	5	5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공통 지표	추진 필요성	필요성 및 적시성	◦ 기술개발 혹은 사업화 사전기획 필요성	10	30
			◦ 기술개발 혹은 사업화 사전기획 적시성	5	
		국내외 동향	◦ 국내외 동향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	
			◦ 국내외 동향 분석과 사업추진 연계성	5	
	추진 계획 적정성	추진계획 구체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30
		추진전략 적절성	◦ 기술개발 혹은 사업화 기획을 위한 연계 전략의 적절성	15	
	기대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 사전기획을 통한 정부 기술개발과제 혹은 사업화과제 수주 가능성	15	30
			◦ 사전기획 실현을 통한 기업의 매출, 고용 등 기여도	15	
	추진 일정	추진일정 적정성	◦ 추진일정에 따른 추진내용의 적정성	5	5
	소요 예산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수행기업 예산 배분의 적정성	5	5
합계			100		